

강원도의회 제314회 정례회 의원 입법 동향

◆ 강원도의회 제314회 정례회(10.6.~10.21.)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14회 정례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2건

상 임 위 원 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2. 10. 21)
안전건설 위원회 (2)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공사·상 (公死·傷) 소방 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원안가결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14회 정례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2. 10. 21.(금)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단,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14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최근 군부대 및 관계기관의 조직개편과 강원도 통합방위예규 및 통합방위작전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간사 등의 구성원을 수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였다.

▣ 강원도 공사·상(公死·傷) 소방 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강원도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하 “자녀장학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자녀장학금의 지원대상자는 고등학교,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도지사가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위원회의 자문 사항에서 자녀장학금의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장학금의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었다.